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9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체육시설(스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확대 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확대

○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별표2제6호마목])

○ 장기등록회원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별표2제5호])

- 사용료 선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

- 조례 제8조(사용료의 징수)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제3항을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 기타 용어정비
 -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 체육시설(안 제1조)
 -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뜻은 다음과(안 제2조)
 - 각호의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구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 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별표2의 제6호마목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로 영등포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2제5호는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 감면할 수 있다”로 영등포 스포츠센터 장기등록회원에게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사용료 감면액은 총 5억3천만원이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30%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6천만원, 장기회원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7백70만원으로, 도합 6천7백70만원이 추가로 재정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8.06.12.>
 5.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된 자가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신설 2009.06.18.>
 6. 영등포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가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신설 2009.06.18.>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06.12., 2013.03.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개정 2009.06.18., 2013.03.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오는 보호자 1명 <개정 2013.03.2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03.21.>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3.03.21.>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06.18., 2013.03.21.>
1. 초등학교 이하 사용료
 2.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의 사용료
-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08.06.12.> <개정 2009.06.18.>